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 2013 - 10호

『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4월 2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

1. 제안이유

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,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과 보호자, 시민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함.(안 제3조)

나.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(안 제4조)

다.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)

라.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위원의 구성·임기 등을 규정함.(안 제7조부터 제13조)

마. 시장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·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.
(안 제1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1일(일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 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misoranda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 :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,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어린이"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.
2. "보호자"란 친권자, 후견인, 어린이를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"안전사고"란 성폭력·학대·약취·유인·유해식품·약물오남용 화재·교통·수난(水難)·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.
4. "초·중등학교 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 - 나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
다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
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제3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과 어린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자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·방치·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
2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, 단위 사업별 계획
3. 안전 관련 단체 등의 육성·지원
4.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

5.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초·중등학교 등 지역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어린이 안전 교육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난관련 부서 등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초·중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

2. 실종과 유괴 예방·방지 교육

3. 약물의 오·남용 예방 교육

4. 화재, 가스폭발,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

5. 교통안전 교육

6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제6조(사업의 보조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2.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·운영
3.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
4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안전 관련 주요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
2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3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2. 인천광역시 어린이안전업무 담당국장
3.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안전업무 담당국장
4.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가
5. 어린이 실종·유괴의 예방 및 약물오남용 관련 전문가
6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의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
7. 어린이 안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8.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,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간사)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

사는 어린이안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정보의 교류 및 협력) 시장은 정부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·단체, 초·중등학교 등의 장과 안전에 관한 정보·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